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9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황정아 · 이기헌 · 조인철

이병진 • 황명선 • 주철현

이용우 • 조계원 • 박용갑

박지혜・김영환・정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주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비율을 10%p 상향하고, 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
|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 |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 |
| 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 | 면) |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 |
|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
| 취득세의 <u>100분의 50</u> 을, 과세기 | 100분의 60 |
| 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 | |
|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 |
| 산세의 <u>100분의 50</u> 을 각각 <u>202</u> | <u>100분의 60</u> <u>203</u> |
| <u>6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 <u>1년 12월 31일</u>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